

# 검 토 보 고 서

200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·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

( 2010. 9. 15 )

**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**

**[ 전문위원 명 금 길 ]**

# 1. 안 건 명

200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·세출결산, 예비비 지출 및  
기금결산 승인안

# 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8월 30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# 3. 의안 회부일자

2010년 9월 6일

# 4. 근거법령

가. 지방자치법 제134조(결산)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(결산승인)

나.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(세입·세출결산서 등의 제출)

## 2009회계연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·세출 결산,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

### <감사담당관 세입·세출>

부서	예산현액	지출액	집행율(%)	이월액	집행잔액
총 계	329,872,000	302,141,540	91.6	-	27,730,

○ 2009회계연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억 2,987만 2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3억 214만 1,540원이 지출되었고, 예산현액 대비 약 8.4%에 해당하는 2,773만 46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, 전년도의 6.9%와 대비하면 불용액 발생비율에 있어서 1.5% 증가하였으나 이는 새로운 사업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전산개발비 등의 집행잔액에 의한 것이며 불용액 발생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 현액 대비 4.4%에 해당하는 1,458만 8,670원,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예산현액 대비 1.3%에 해당하는 429만 5,980원, 기타 기간제 근로자보수 및 전산개발비에서 489만 5,65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불용된 것은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판단되므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